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KOREAN METAL WORKER'S UNION LEGAL CENTER

경북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423-23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전화 054-741-3500/ 팩스 054-741-1800

문서번호 : 금속 법률원-22-01-26

시행일자 : 2022. 1. 26.

수 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 신 : 금속노조 법률원 (담당 : 탁선호 변호사)

제 목 : 발레오만도지회 생계지원금 환입 소송 관련 질의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의 요지

귀 지부에서는 발레오만도지회 생계지원금 미환입 사항과 관련하여 1) 발레오만도지회 해고무효확인 사건 대법원 승소의 의미 및 반환의 범위(전부 승소/일부 승소인지 여부), 2) 미반환된 부분에 대한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 3) 소송진행시 소송비용과 재판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 아래 2항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금속법률원이 2021. 8. 13.에 송부한 의견서(문서번호 : 금속법률원-21-08-13)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발레오만도지회 해고무효확인 사건 대법원 승소의 의미 및 반환의 범위

가. 관련 규정

경주지부 운영규정에는 생계지원금 반환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경주지부 대의원대회 결의에서는 “대법원 승소하거나 회사와 합의로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받을 시 조합원들은 1개월 이내에 생계지원금을 경주지부에 환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반환 요건인 ‘대법원 승소로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1) 발레오만도지회 투쟁의 의미, 2) 생계지원금의 성격, 3) 해고 소송의 성격, 4) 참고 관련 규정에 비추어보았을 때 만58세 까지 지급받은 생계지원금과 만58세 도과 이후에 지급받은 생계지원금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발레오만도지회 투쟁의 의미

발레오만도지회 투쟁 및 관련한 법률투쟁은 당사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회복시키기 위한 투쟁뿐만 아니라 국가-자본의 조직적인 민주노조 파괴 공작을 저지하고 경주지역 내에서 금속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 생계지원금의 성격

생계지원금의 성격은 ‘상호부조-반환 약정’의 성격과 ‘투쟁 지원’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하자면, 전자의 경우 반환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천막농성투쟁이라는 특정한 활동(의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라. 해고소송의 성격

발레오만도지회 해고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쟁점 중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 했지만, 조직형태 변경 무효 부분에서는 패소하여 금속노조 단체협약을 적용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승소로 볼 수 있습니다.

마. 참고 관련 규정

참고할 수 있는 금속노조 기금운영규정의 반환 규정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속노조로부터 기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중복하여 회사와 기금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만58세까지 지급받은 생계지원금은 대법원 승소로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과 중복된다고 볼 수 있지만, 만58세 도과 이후 지급받은 생계지원금은 대법원 승소로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과 중복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바. 종합 검토 결과

생계지원금 반환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 발레오만도지회 투쟁의 의미, 2) 생계지원금의 성격, 3) 해고 소송의 성격, 4) 참고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조합원들이 만 58세까지 지급받은 생계지원금과 만58세 도과 이후에 지급받은 생계지원금의 성격은 차이가 있고, 해고무효확인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일부승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58세까지 지급받은 생계지원금은 대법원 승소로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과 중복되어 반환대상에 포함되지만, 만58세 도과 이후에 지급받은 생계지원금은 대법원 승소로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과 중복되지 않아 반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3. 미반환된 부분에 대한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

위 1번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만58세 도과 이후 지급받은 생계지원금은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58세 도과 이후 부분 미환입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승소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소송 진행시 청구 금액 292,726,774원 기준 소송비용과 재판기간

가.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제기시 크게 변호사 비용(착수금/성공보수), 법원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청구금액 기준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 및 패소 시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소가) 292,726,774원 기준 법원 납부비용과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금액(소가) 292,726,774 기준				
분 류	1심	2심	3심	비 고
인지대	1,103,300	1,654,900	2,206,600	1심 인지대 계산내역 => [(292,726,774원 × (40/10,000)) + 55,000원] × 0.9 2심 인지대는 1심의 1.5배. 3심 인지대는 1심의 2배의 비용을 법원에 납부해야 함.
송달료	1,014,000	1,014,000	1,014,000	심급당 동일한 금액임. => 13명(청구하는 인원수) × 15회분 × 5,200원
소 계	2,117,300	2,668,900	3,220,600	* 인지송달료 합계
패소시 부담 변호사 비용	11,327,268	11,327,268	11,327,268	심급당 동일한 금액임 => 10,400,000원 + (292,726,774원 - 200,000,000원) × 1%
총 합 계	13,444,568	13,996,168	14,547,868	* 인지송달료 및 패소시 부담 변호사 비용 합계

즉, 1심 패소 시에는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은 2,117,300원, 패소시 부담하는 변호사비용 11,327,268원을 합한 13,444,568원, 2심 패소 시에는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은 2,668,900원, 패소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11,327,268원을 합한 13,996,168원, 3심 패소 시에는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은 3,220,600원, 패소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11,327,268원을 합한 14,547,868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패소 시 1, 2, 3심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41,988,604원입니다(*위 금액은 소 제기시 원고측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나. 재판기간

재판기간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간단한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 6월에서 2년 정도 걸리나, 사건의 특성, 쟁점의 내용, 재판부의 진행방식 등의 변수가 많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 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끝.

2022년 1월 26일

본 의견서는 저희가 송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작성된 것이며, 본 의견서의 외부 반출 또는 수정을 통한 활용 시에는 반드시 법률원과 미리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장(직인생략)